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2011.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1-36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1. 제안이유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 3. 의견 제출

-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865, 6867(FAX : 02-2100-6862)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18호 학교생활문화팀(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7호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 제1항의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1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5.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6. 퇴학처분

제31조 제3항 및 5항, 6항, 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상담·선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출석정지 기간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의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생략)</p> <p>7. <u>학생포상 및 학생징계</u></p> <p>&lt;신설&gt;</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내의 봉사</li> <li>2. 사회봉사</li> <li>3. 특별교육이수</li> <li>4. 퇴학처분</li> </ol> <p>③ <u>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현행과 같음)</p> <p>7. <u>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u></p> <p>④ <u>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u></li> <li>2. 학교내의 봉사</li> <li>3. 사회봉사</li> <li>4. 특별교육이수</li> <li>5. <u>10일 이내의 출석정지</u></li> <li>6. 퇴학처분</li> </ol> <p>③ <u>교육감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상담·선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u></p>

-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신 설>

출석정지 기간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 ①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 평생직업교육국 이러닝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867 (02) 2100 - 6421